

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이성수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0. 20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615호로 2025년 10월 2일 이성수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, 나아가 건강한 출산·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,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(안 제3조)

나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범위 및 기준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모자보건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5.10.2.~2025.10.15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발의됨.

○ 주요내용

조	제 명	내 용
제1조	목적	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
제2조	정의	산모, 신생아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, 본인부담금, 서비스 제공기관의 용어 정의
제3조	지원대상	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& 출생아 영등포구 출생등록자 중 - 셋째아 이상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장애인 산모 - 희귀질환 산모 - 한부모 산모
제4조	지원범위 및 기준	본인부담금 90% 이내 - 단,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차액 지급
제5조	지원신청	서비스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제6조	지원대상 확인 등	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 명의 계좌로 지급
제7조	중복지원 제한	동일, 유사 사유로 지원 시 지원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제8조	환수조치	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,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을 시 환수조치함
제9조	홍보 및 안내	홍보물 제작, 배포, 온라인 안내 등 가능
제10조	협조요청	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 요구 가능
제11조	시행규칙	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,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
-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, 지원 범위 및 기준, 신청 절차, 환수 조치 등에

대하여 명시함.

-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해당 사업 홍보 및 협조 요청 가능 규정과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○ 검토 결과

-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」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¹⁾과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8²⁾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관리³⁾를 도와 주는 “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”을 시행 중임.
- 본 사업의 정부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%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지만,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⁴⁾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서울시에서는 소득 기준 관계없이 서울시 거주 산모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고 있었으나,

1) 제9조(모자보건의 증진 등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·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 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2) 제15조의18(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신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신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(이하 "산후조리도우미"라 한다)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3) 산모 건강관리(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목욕, 수유지원 등), 산모 식사준비, 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

- 4) 희귀난치성질환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, 분만취약지 산모, 쌍생아, 둘째아,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

-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바, 본 조례안에서는 “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”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출생아를 우리 구(區)에 출생 등록한 자 중에 셋째아 이상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한부모 산모 등이며 본인부담금의 90% 이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우리 구(區)의 “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”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, 본 조례안 통과로 신규로 발생하게 될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계 내역은 총 63,477천원으로 예상함.

【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실적】

(단위: 명, 천원)

구분	실적(명)		예산액(천원)		집행액(천원)	
	전환형	서울형	전환형	서울형	전환형	서울형
2024	1,760	0	1,918,293	1,100	1,918,293	0
2025.9	1,518	1	2,371,917	3,344	2,371,917	667

※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지급하여 예산 집행률 100%
(2025. 9. 기준 실집행액: 1,871,220천원)

【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계】

구분	A-통합-3형 (중위소득 150%이하)	A-라-3형 (중위소득 150%초과)	장애인, 희귀질환 산모	총계
인원(명)	48	10	5	63
소요예산(천원)	46,752	12,300	4,425	63,477

- '24년 출생아 기준으로 인원 추계, 출산유형에 따라 차등지원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: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하여 제외

-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8⁵⁾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, 동법 시행령 제17조의7제3항⁶⁾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고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8조제4항⁷⁾에 의거 사회서비스의 수익자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⁸⁾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바, 본 조례안의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⁹⁾를 받아야 할 사항이며 집행부서에서는 9월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음.

5) 제15조의18(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(이하 "산후조리도우미"라 한다)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6) 제17조의7(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)

-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다만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.

7) 제28조(비용의 부담)

-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8) 제26조(협의 및 조정)
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9)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 2025.9.17. 제출 (건강증진과-21231호)

참 고 자 료

1 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

제9조(모자보건의 증진 등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·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2 모자보건법

제15조의18(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신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신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(이하 "산후조리도우미"라 한다)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3 모자보건법 시행령

제17조의7(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)

-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다만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.